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31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4. 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 준비 비용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

2. 주요내용

제6조제2항제1호 중 **메이크업** 등을 **메이크업, 사진촬영, 자격시험 응시료**로 수정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**메이크업 등**”을 “**메이크업, 사진촬영, 자격시험 응시료**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사업 추진·지원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사업 추진·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(헤어스타일링, 메이크업 등)</u></p> <p>2. <u>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</u></p>	<p>제6조(사업 추진·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메이크업, 사진촬영, 자격시험 응시료)</u>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(개정안과 같음)</p>